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44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 황규복, 김소영, 오한아 의원이 2021년 8월 2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정진술 의원이 2021년 8월 9일 대표발의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에서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신설되어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추가 및 변경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생략) 1. ~ 5. (생략) <u><신설></u> <u>6.</u> (생략)	제7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u> <u>7.</u> (현행 제6호와 같음)